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100099-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26. 4. 3.(금) 14: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100099-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26. 4. 3.(금) 14: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 동일한 주제로 진행된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실태조사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재차 점검하고자 한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존엄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이유로 한 배제와 불이익, 혐오와 낙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학교와 일터가 성소수자들에게는 편견과 차별을 마주해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나 인식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최소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보장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실태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차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 인권 문제입니다.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인권보장 수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치를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오늘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일시 | 2026. 4. 3.(금)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50~14:00	참가자 등록 및 장내 정리
14:00~14:10	사전 진행 : 최혜령(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14:1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참석자 소개 • 인사말 이숙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참석자 단체 사진 촬영
제1부 14:10~15:20	<p>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전민영(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p> <p>발표 1. 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홍성수(책임연구원,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p> <p>발표 2.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청소년 정성조(공동연구원,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p> <p>발표 3.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성인 이호림(공동연구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p> <p>발표 4.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조혜인(공동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p>
15:20~15:30	휴식

시간	내용
제2부 15:30~16:30	<p>지정 토론 및 전체 토론</p> <p>토론 1.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p> <p>토론 2. 성소수자 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여수진(노무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p> <p>토론 3. 성소수자의 의료실태와 개선 방안 윤현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소수자 의료연구회)</p> <p>토론 4. 트랜스젠더와 신분증, 그리고 선거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p>
16:30~16:50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6:50~17:00	폐회 및 정리

목 차

1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

발표 1. 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11
홍성수(책임연구원,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발표 2.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청소년	19
정성조(공동연구원,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발표 3.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성인	39
이호림(공동연구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발표 4.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73
조혜인(공동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부 <지정 토론>

토론 1.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	95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텡둥)	
토론 2. 성소수자 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101
여수진(노무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토론 3. 성소수자의 의료실태와 개선 방안	105
윤현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토론 4. 트랜스젠더와 신분증, 그리고 선거	109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발표 1.

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홍성수(책임연구원,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홍성수(책임연구원,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2026.4.3.

연구책임자 홍성수 (숙명여대)

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방법

연구 배경 및 목적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구별, 배제, 제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의 필요성: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성소수자 관련 실태조사나 국가적 차원의 통계의 부재
 -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인권위)
 -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인권위)
- 성소수자 차별에 대응하는 법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

연구 배경 및 목적

-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이 두드러지며, 일상 및 가족생활,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국가기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는 혐오표현과 괴롭힘, 가족구성권의 제한과 가족 내에서의 배제, 의료서비스 접근 과정에서의 편견과 거부,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 차별로 인한 우울증상,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보고되어 왔음

연구 내용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판례, 인권위 결정례 분석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 및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인권법적 흐름
- 해외의 제도 현황
- 각국의 기사와 NPO보고서를 수집하여 공공·민간영역의 세부적 인권정책 및 캠페인 성공 사례

전체 목차

<p>제1장 서론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선행 연구 검토 III. 연구내용 IV. 연구방법</p> <p>제2장 국내외 법령, 정책, 판례 동향 I. 차별 및 혐오 금지 II. 교육 III. 노동 IV. 시설 및 재화·용역 V. 국가기관 VI. 보건의료 VII. 성별의 법적 인정 VIII. 혼인평등/가족구성권</p> <p>제3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 제4절 연구방법 I. 연구 대상 II. 문항의 구성 III. 연구방법</p>	<p>제2절 성인 실태조사 결과 I.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II.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p> <p>제3절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I. 연구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II.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p> <p>제4절 사회적 관용 및 정치적 요구 인식</p> <p>제4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I. 가시화와 인식 개선 II. 차별 및 혐오 금지 III. 교육 IV. 노동 V. 시설 및 재화·용역 VI. 국가기관 VII. 보건의료 IV. 성별의 법적 인정 X. 혼인평등·가족구성권</p> <p>제5장 결론 I. 연구내용 요약 II. 연구의 활용</p>
--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방법과 대상

- 조사 방법: 2025년 7월 8일 ~ 21일 (2주간) 온라인 설문 (사례비: 5,000원 상당 커피 기프티콘)
- 성인 (n=2,495)
 - 최근 5년 내 한국에서 거주한 만 19세 이상(2006년 이전 출생자) 성소수자
 -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한 5,850명 중 중도 탈락자, 연구참여자 기준에 맞지 않는 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2,495명
- 청소년 (n=457)
 - 최근 5년 내 한국에서 거주한 만 16세~18세(2007년~2009년생) 성소수자
 -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한 1,371명 중 중도 탈락자, 연구참여자 기준에 맞지 않는 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457명

* 본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영역

- 성인
성소수자 정체성과 커밍아웃, 성별정정과 의료적 조치(트랜스젠더), 차별 경험(일상 생활, 교육 영역, 노동 영역, 서비스 이용, 국가기관), 괴롭힘과 폭력 경험, 법제도적 욕구 등
- 청소년
성소수자 정체성과 커밍아웃, 의료적 조치(트랜스젠더), 차별 경험(일상 생활, 교육 영역, 서비스 이용), 괴롭힘과 폭력 경험, 법제도적 욕구 등

초점집단면접

연구 방법과 대상, 영역

- 기간: 2025년 8월 2일 ~ 24일 (7회)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인터뷰 참여 희망자를 선별하여 대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
 - 초점집단면접은 성별정체성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6명씩, 청소년 3개 집단, 성인 4개 집단으로 총 7개 집단 28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함 (사례비: 50,000원)
 - 성인 집단은 직장 내 차별 경험, 청소년 집단은 학교 생활과 가족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함

※ 본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발표 2.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청소년

정성조(공동연구원,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청소년



정성조(공동연구원,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청소년 혐오차별 실태조사 주요결과

정성조 (중앙대 사회학과)

인구사회학적 분포

청소년 응답자 (n=455)

	성적지향							
	전체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이성애	기타		
전체	455 (100.0)	132 (29.0)	242 (53.2)	60 (13.2)	7 (1.5)	14 (3.1)		
시스젠더남성	69 (15.2)	38 (8.4)	27 (5.9)	3 (0.7)	0 (0.0)	1 (0.2)		
시스젠더여성	216 (47.5)	71 (15.6)	115 (25.3)	23 (5.1)	0 (0.0)	7 (1.5)		
트랜스젠더남성	40 (8.8)	8 (1.8)	25 (5.5)	5 (1.1)	1 (0.2)	1 (0.2)		
트랜스젠더여성	26 (5.7)	7 (1.5)	14 (3.1)	0 (0.0)	5 (1.1)	0 (0.0)		
논바이너리/자장성별남성	14 (3.1)	2 (0.4)	9 (2.0)	2 (0.4)	0 (0.0)	1 (0.2)		
논바이너리/자장성별여성	90 (19.8)	6 (1.3)	52 (11.4)	27 (5.9)	1 (0.2)	4 (0.9)		

인구사회학적 분포

청소년 응답자 (n=455)

구분		단위: 명 (%)
연령	16세	91 (19.9)
	17세	156 (34.1)
	18세	210 (46.0)
성소수자 정체성	지정성별 남성	111 (24.3)
	지정성별 여성	346 (75.7)
거주지역	서울	133 (29.1)
	경기·인천	164 (35.9)
	그 외 지역	160 (35.0)

- 조사 규모와 각 집단별 규모를 고려했을 경우 성인과 달리 세부집단을 구분해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워 태어난 성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
- 대신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문항들을 배치하여 트랜스젠더 집단을 별도 분석함
- 시스젠더/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해 향후 더 큰 표본을 바탕으로 한 추가 분석/연구 필요

일상생활

정체성 인식, 수용, 커밍아웃 시기

연령(년)	청소년			성인				
	전체 (n=452)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3)	전체 (n=2,489)	남성 동성애자/양 성애자 (n=626)	여성 동성애자/양 성애자 (n=764)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n=321)	그 외 성소수자 (n=778)
정체성 최초 인지 시기 (a)	13.1	13.7	12.9	14.5	14.1	15.2	12.8	14.9
정체성 수용 시기 (b)	14.5	15.0	14.3	17.9	17.9	17.6	17.9	18.4
인지부터 수용까지 걸리는 시간(b-a)	(1.4)	(1.3)	(1.4)	(3.4)	(3.8)	(2.4)	(5.1)	(3.5)
최초 커밍아웃 시기	14.5	14.0	14.7	19.2	20.3	18.6	18.7	19.3

일상생활

케어아웃

(케어아웃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 ^{*)})	전체 (n=455)		지정상별 남성 (n=109)		지정상별 여성 (n=346)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어머니	339 (74.5)	78 (71.6)	261 (75.4)			
아버지	325 (71.4)	79 (72.5)	246 (71.1)			
형제자매	142 (31.2)	37 (33.9)	105 (30.3)			
성소수자 친구, 동료	111 (24.4)	43 (39.4)	68 (19.7)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 동료	108 (23.7)	29 (26.6)	79 (22.8)			
학교 교사	79 (17.4)	40 (36.7)	39 (11.3)			
심리상담전문가	77 (16.9)	24 (22.0)	53 (15.3)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	76 (16.7)	34 (31.2)	42 (12.1)			
해당 사항 없음(카카오 경험 없음)	63 (13.8)	17 (15.6)	46 (13.3)			

Note. a. 어머니, 아버지 대상 '없음', 그 외 항목에 일부에게만 있었음, 대부분에게만 있었음, '모두에게 많았음'으로 응답한 경우

(중복응답 가능)	전체 (n=452)		지정상별 남성 (n=109)		지정상별 여성 ^{a)} (n=343)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회피했다	121 (26.8)	21 (19.3)	100 (29.2)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채했다	77 (17.0)	18 (16.5)	59 (17.2)			
출생시 지정받은 성별의 성별표현을 할 것을 강요당했다	64 (14.2)	28 (25.7)	36 (10.5)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	43 (9.5)	12 (11.0)	31 (9.0)			
웃어나 화장 등 암시는 성별표현을 못하게 했다	41 (9.1)	21 (19.3)	20 (5.8)			
연인 또는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다	23 (5.1)	9 (8.3)	14 (4.1)			
집에서 내려가거나 경제적 지원,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였다	22 (4.9)	7 (6.4)	15 (4.4)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을 감시, 금지하였다	18 (4.0)	5 (4.6)	13 (3.8)			
성소수자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의사, 상담사 또는 종교인에게 데려갔다	8 (1.8)	4 (3.7)	4 (1.2)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8 (1.8)	3 (2.8)	5 (1.5)			
집에서 내려왔다	4 (0.9)	1 (0.9)	3 (0.9)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5 (1.1)	3 (2.8)	2 (0.6)			
관계를 끊었다	1 (0.2)	1 (0.9)	0 (0.0)			
위와 같은 경험이 없다	247 (54.6)	52 (47.7)	195 (56.9)			

Note. a. 무응답 3명

일상생활

매체를 통한 혐오표현 경험

(중복응답가능)	전체 (n=454)	지장성별 남성 (n=109)	지장성별 여성* (n=345)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407 (89.6)	79 (72.5)	328 (95.1)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	384 (84.6)	72 (66.1)	312 (90.4)
온라인 기사 등의 댓글	321 (70.7)	59 (54.1)	262 (75.9)
뉴스, 인터넷 기사 등 언론	303 (66.7)	61 (56.0)	242 (70.1)
예능, 교양 등 방송 프로그램	149 (32.8)	20 (18.3)	129 (37.4)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131 (28.9)	18 (16.5)	113 (32.8)
게임	97 (21.4)	18 (16.5)	79 (22.9)
광고	90 (19.8)	14 (12.8)	76 (22.0)
가타 마패(직접 입력)	15 (3.3)	3 (2.8)	12 (3.5)
경험한 적 없음	20 (4.4)	18 (16.5)	2 (0.6)

차별경험

차별 경험 있음	전체 (n=455)	지장성별 남성 (n=109)	지장성별 여성 (n=346)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차별 경험 없음	99 (21.8)	25 (22.9)	74 (21.4)
(중복응답가능)	356 (78.2)	84 (77.1)	272 (78.6)
전체 (n=95)	지장성별 남성 (n=25)	지장성별 여성* (n=70)	
학교에서	74 (77.9)	24 (96.0)	50 (71.4)
학원에서	28 (29.5)	6 (24.0)	22 (31.4)
화장실, 티셔츠, 사우나 등에서	24 (25.3)	12 (48.0)	12 (17.1)
관광서 등 공공기관에서	9 (9.5)	3 (12.0)	6 (8.6)
의료기관에서	9 (9.5)	1 (4.0)	8 (11.4)
상점기판에서	7 (7.4)	1 (4.0)	6 (8.6)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7 (7.4)	1 (4.0)	6 (8.6)
카페, 식당 등에서	7 (7.4)	2 (8.0)	5 (7.1)
상점에서	5 (5.3)	1 (4.0)	4 (5.7)
기타	15 (15.8)	1 (4.0)	14 (20.0)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학교생활에서 시설, 제도와 관련된 어려움

	전체 ^a (n=445)	지장성별 남성 ^b (n=108)	지장성별 여성 ^c (n=337)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성별에 따른 교복, 반 번호, 출석기, 체육활동 등을 구별하는 것	145 (32.6)	26 (24.1)	119 (35.3)
각종 신청서나 OMR 카드 담인지 등에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성별 기입	109 (24.5)	27 (25.0)	82 (24.3)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이용	92 (20.7)	20 (18.5)	72 (21.4)
여중, 여고 또는 남중, 남고인 점	52 (11.7)	15 (13.9)	37 (11.0)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부재	50 (11.2)	18 (16.7)	32 (9.5)
학교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성소수자 배제적 분위기	46 (10.3)	7 (6.5)	39 (11.6)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기숙사 이용 및 합숙	25 (5.6)	3 (2.8)	22 (6.5)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동아리 및 모임의 금지	22 (4.9)	6 (5.6)	16 (4.7)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징계 및 처벌 규칙	19 (4.3)	6 (5.6)	13 (3.9)
기타	22 (4.9)	5 (4.6)	17 (5.0)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힘든 점 없었음	187 (42.0)	53 (49.1)	134 (39.8)

Note. a. 무응답 10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9명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교사로부터 괴롭힘 경험

청소년 응답자, 해당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아래와 같은 경험이 하나라도 있음	142 (31.2)	53 (48.6)	89 (25.7)
같은 보이는 성별에 맞게끔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강요하였다	113 (24.8)	41 (37.6)	72 (20.8)
내가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표현하거나 언급하면 자제시켰다	64 (14.1)	21 (19.3)	43 (12.4)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내 정체성을 알렸다	41 (9.0)	27 (24.8)	14 (4.0)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끈질기게 묻고 알아내려고 하였다	29 (6.4)	18 (16.5)	11 (3.2)
다른 사람에게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6 (5.7)	22 (20.2)	4 (1.2)
내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12 (2.6)	5 (4.6)	7 (2.0)

Note. a. 각 항목에 대하여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교사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 경험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454)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5)
남성과 여성만을 전제로 하고 성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설명 (예: "남자는 ~해야 하고, 여자는 ~해야 한다")	217 (47.8)	33 (30.3)	184 (53.3)
성소수자를 회화하거나 조롱하는 농담	146 (32.2)	27 (24.8)	119 (34.5)
"게이(혹은 레즈비언)같다" 등의 편견에 기댄 표현	145 (31.9)	25 (22.9)	120 (34.8)
이성애를 제외한 성적지향을 반대하는 표현	142 (31.3)	22 (20.2)	120 (34.8)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것 (예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다")로 일컫는 표현	136 (30.0)	26 (23.9)	110 (31.9)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에 기댄 표현	95 (20.9)	22 (20.2)	73 (21.2)
동성결혼·성별장장·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관련 법 제도를 반대하는 개인적 견해를 수업 중 강조	88 (19.4)	17 (15.6)	71 (20.6)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직접적 표현 (예: "똥고충", "호모새끼" 등)	45 (9.9)	11 (10.1)	34 (9.9)
기타	12 (2.6)	1 (0.9)	11 (3.2)
위와 같은 경험 없음	131 (28.9)	49 (45.0)	82 (23.8)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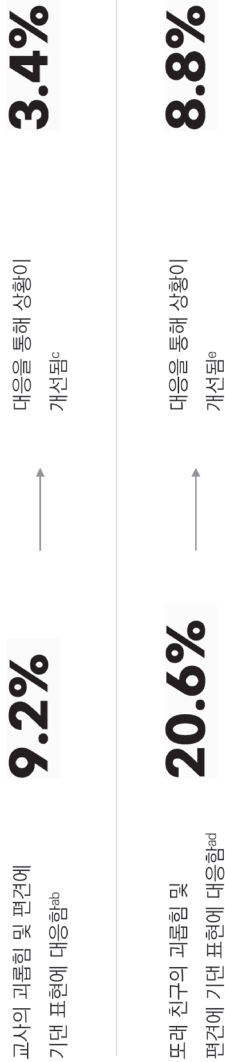
교사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 경험

“선생님들이 그냥 되게 장난식으로, 농담 식으로 그런 욕을 많이 하세요. 트랜스일 때도 있고 게이 일 때도 있고, 레즈비언은 약간 드물기는 한데. 성소수자에 대한 욕을 하면, 저도 당연히 ‘레즈비언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하고서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되게 존경했던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하셔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멀어진다던가. (...) 여자의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는 하리수 이런 사람은 여자로 안 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하하하” 웃고. 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자신이 쿼어 페이드를 한 번 본 적 있는데 “되게 문란하고 너희는 그런 거를 절대 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반에서 제가 쿼어인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FGI 참여자 28, 19세, 동성애자 여성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Note.

- a. 직전 항의, 위블레스 상담, 외부 도움 요청 등
- b.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대 표현을 경험해본 응답자 (n=323)
- c.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대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9)
- d.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대 표현을 경험해본 응답자 (n= 389)
- e.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대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n=80)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상담 선생님과 성소수자 관련 상담 여부 및 말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이야기한 적 없음	407 (89.5)	91 (83.5)	316 (91.3)
이야기한 적 없는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407)	지정성별 남성 (n=91)	지정성별 여성 (n=316)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 같아서	225 (55.3)	32 (35.2)	193 (61.1)
담임교사, 부모 등에게 아무런 말도 걸어서	215 (52.8)	35 (38.5)	180 (57.0)
성소수자라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202 (49.6)	55 (60.4)	147 (46.5)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할 것 같아서	186 (45.7)	29 (31.9)	157 (49.7)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이 없어서	115 (28.3)	12 (13.2)	103 (32.6)
다른 곳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있어서	21 (5.2)	6 (6.6)	15 (4.7)
기타	28 (6.9)	6 (6.6)	22 (7.0)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학교 내 상담의 한계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약간 그런 귀어 쪽에 그런 길 약간 이해해 주시고 좀 그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마음 놓고 고민을 막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FGI 참여자 18, 17세, 범성애자 논바이너리

“사실 위클래스에 가도 선생님 자체가 이제 귀어에 대해서 잘 거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당연히 일반 선생님을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거를 상담을 받거나 그런 선생님은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FGI 참여자 19, 19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성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탈학교 경험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n=79

집에만 있었던 경험 (은둔 상태)	전체 (n=79) 응답자수 (%)	자장상별 남성 (n=11) 응답자수 (%)	자장상별 여성 (n=68) 응답자수 (%)
경험 있음	60 (75.9)	8 (72.7)	52 (76.5)
경험 없음	19 (24.1)	3 (27.3)	16 (23.5)

탈학교 경험 있음	전체 (n=455)	자장상별 남성 (n=109)	자장상별 여성 (n=346)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79 (17.4)	11 (10.1)	68 (19.7)
장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전체 (n=79)	자장상별 남성 (n=11)	자장상별 여성 (n=68)
기본 학교 교육 방식이 맞지 않아서	56 (70.9)	8 (72.7)	48 (70.6)
학교가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어서 (학정실 등 시설 이용의 어려움, 성소수자 혐오적인 분위기 등)	45 (57.0)	5 (45.5)	40 (58.8)
괴롭힘이나 배틀림 등으로 인해	20 (25.3)	7 (63.6)	13 (19.1)
취업/이르버이트 등 진로와 관련된 이유로	18 (22.8)	4 (36.4)	14 (20.6)
성소수자권이 원치 않게 타인에게 알려져서	12 (15.2)	2 (18.2)	10 (14.7)
부모님과의 갈등, 집안 경제사정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9 (11.4)	4 (36.4)	5 (7.4)
기타 주관식 응답 작성 여부	9 (11.4)	3 (27.3)	6 (8.8)
	6 (7.6)	1 (9.1)	5 (7.4)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성소수자에 지지적인 선생님의 존재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없음	221 (48.6)	49 (45.0)	172 (49.7)
있음, 1명	92 (20.2)	20 (18.3)	72 (20.8)
있음, 2-3명	115 (25.3)	30 (27.5)	85 (24.6)
있음, 4-5명	14 (3.1)	5 (4.6)	9 (2.6)
있음, 6명 이상	13 (2.9)	5 (4.6)	8 (2.3)
있다고 답한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233)	지정성별 남성 (n=60)	지정성별 여성 ^a (n=173)
긍정적인 영향을 줌	118 (50.6)	27 (45.0)	91 (52.6)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110 (47.2)	29 (48.3)	81 (46.8)
부정적인 영향을 줌	5 (2.1)	4 (6.7)	1 (0.6)

Note. a. 무응답 1명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성소수자 포용적인 학교를 위해 바라는 변화

청소년 응답자, 최대 3개 중복응답,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교육과정 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 포함	254 (65.8)	38 (34.9)	216 (62.4)
성소수자 관련 혐오/차별 예방 교육 실시	220 (48.4)	63 (57.8)	157 (45.4)
학교 교사의 성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인식 개선	195 (42.9)	33 (30.3)	162 (46.8)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교칙 마련	140 (30.8)	42 (38.5)	98 (28.3)
남성 혹은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선	124 (27.3)	24 (22.0)	100 (28.9)
성중립 화장실, 탈의실 설치 등 성별 구분적 학교 시설의 변화	101 (22.2)	19 (17.4)	82 (23.7)
성별 구분 제도(반번호, 수련회 등 숙소, 학교 서식에서의 성별 기재) 등의 개선	96 (21.1)	23 (21.1)	73 (21.1)
성소수자 동아리 또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인권 동아리 활동	88 (19.3)	21 (19.3)	67 (19.4)
상담 교사의 성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인식 개선	66 (14.5)	20 (18.3)	46 (13.3)

트랜스젠더

의료적 조치 - 호르몬

트랜스젠더 응답자 n=160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전체 (n=160)	지정성별 남성 (n=38)	지정성별 여성 (n=122)	응답자 수 (%)
받고 있다	12 (7.5)	5 (13.2)	7 (5.7)	
과거에 받았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다	4 (2.5)	3 (7.9)	1 (0.8)	
받지 않았다	144 (90.0)	30 (78.9)	114 (93.4)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거나 중단한 응답자 n=148

(중복응답가능)	전체 (n=148)		트랜스젠더 지정성별 남성 (n=33)		트랜스젠더 지정성별 여성 (n=115)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55 (37.2)	7 (21.2)	48 (41.7)			
장신과 잔디가 없어서	58 (39.2)	14 (42.4)	44 (38.3)			
아직 고민 중이라서	54 (36.5)	14 (42.4)	40 (34.8)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37 (25.0)	8 (24.2)	29 (25.2)			
경제적 부담 때문에	49 (33.1)	10 (30.3)	39 (33.9)			
가족, 지인의 반대로	27 (18.2)	8 (24.2)	19 (16.5)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47 (31.8)	12 (36.4)	35 (30.4)			
확답이나 취업, 직장 생활에 아쉬움이 생길 것 같아서	42 (28.4)	7 (21.2)	35 (30.4)			
간접성의 이유 때문에	9 (6.1)	5 (15.2)	4 (3.5)			

정신건강 영역

우울증상 (CES-D)

성인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2,389)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627)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765)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d (n=322)	그 외 성소수자 ^e (n=781)
우울 증상 ^a	1,095 (45.8)	185 (30.9)	280 (37.8)	198 (63.7)	432 (57.9)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439)	자장성별 남성 ^b (n=104)	자장성별 여성 ^b (n=335)		
우울 증상 ^a	303 (69.0)	65 (62.5)	238 (71.0)		

Note. a. CES-D 20개 문항(0-3점) 합계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무응답 106명. c. 무응답 28명. d. 무응답 11명. e. 무응답 32명. f. 무응답 35명. g. 무응답 16명. h. 무응답 5명. i. 무응답 11명

발표 3.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성인

이호림(공동연구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본 혐오차별 실태 - 성인



이호림(공동연구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성인 혐오차별 실태조사 주요결과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인구사회학적 분포

인구사회학적 분포 (n=2,495)

구분	N (%)
연령	20대 1,587 (63.6)
	30대 743 (29.8)
	40대 이상 165 (6.6)
성소수자 정체성	남성 동성애자·양성애자 627 (25.1)
	여성 동성애자·양성애자 765 (30.7)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322 (12.9)
	그 외 성소수자 781 (31.3)

구분	N (%)
거주지역	서울 1,063 (42.6)
	경기·인천 747 (29.9)
	그 외 지역 685 (27.5)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456 (58.4)
	200~300만원 515 (20.6)
	300~400만원 263 (10.5)
	400만원 이상 261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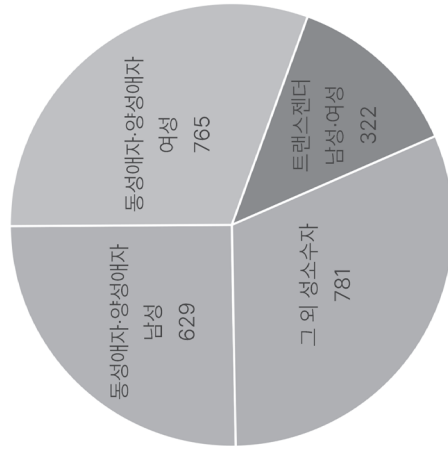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분포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 (n=2,495)

	성적지향						
	전체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이성애	기타	
전체	2,495 (100.0)	1,008 (40.4)	893 (35.8)	408 (16.4)	71 (2.9)	115 (4.6)	
시스젠더남성	650 (26.1)	542 (21.7)	85 (3.4)	19 (0.7)	-	4 (0.2)	
시스젠더여성	915 (36.7)	341 (13.7)	424 (17.0)	127 (5.1)	-	23 (0.9)	
트랜스젠더남성	156 (6.3)	20 (0.8)	69 (2.8)	31 (1.2)	34 (1.4)	2 (0.1)	
트랜스젠더여성	166 (6.7)	32 (1.3)	81 (3.3)	13 (0.5)	31 (1.2)	9 (0.4)	
논바이너리/지정성별남성	120 (4.8)	29 (1.2)	53 (2.1)	22 (0.9)	3 (0.1)	13 (0.5)	
논바이너리/지정성별여성	488 (19.6)	44 (1.8)	181 (7.3)	196 (7.9)	3 (0.1)	64 (2.6)	

인구사회학적 분포

보고서용 정체성 집단 구분 방식



- 보고서 편집상 4개 집단 이상으로 세부 분석을 제시하기 어려움
- 각 집단 별 인원 배분 및 정체성 특성 등 고려
- LGBT로 정체화 하지 않는 성소수자(논바이너리, 퀴어 등)이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서술할 필요
- 기존의 전통적인 정체성 용어로 정체화 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별도의 연구 필요성 제기

트랜스젠더

성별정체성 관련 부당한 경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경험

	전체 ^a (n=882)		트랜스 남성 (n=155)		트랜스 여성 (n=158)		논바이너리 지정성별여성 ^b (n=465)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c (n=104)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해당 사항 없음(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적 없음)	683(77.4)	82(52.9)	92(58.2)	421(90.5)	88(84.6)					
장인증이 필요한 술,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의 방문	88(10.0)	35(22.6)	38(24.1)	10(2.1)	5(4.8)					
은행 방문 및 상담	58(6.6)	32(20.7)	23(14.6)	1(0.2)	2(1.9)					
보험 가입 및 상담	63(7.1)	26(16.8)	26(16.5)	7(1.5)	4(3.9)					
본인 명의의 주택 매매, 임대 등 계약	36(4.1)	17(11.0)	11(7.0)	4(0.9)	4(3.8)					
선거 투표 참여	28(3.2)	10(6.5)	13(8.2)	3(0.7)	2(1.90)					
증명서 발급	59(6.7)	25(16.1)	18(11.4)	5(4.8)	11(2.4)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137(15.5)	54(34.8)	45(28.5)	30(6.5)	8(7.7)					
여권 발급	27(3.1)	7(4.5)	13(8.2)	5(1.1)	2(1.9)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 가입 및 변경	44(5.0)	21(13.6)	13(8.23)	6(1.3)	4(3.8)					

Note. a. 무응답 = 3, b. 무응답 = 2, c. 무응답 = 1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 의향

법적 성별 정정 여부

	전체 (n=885)	트랜스 남성 (n=155)	트랜스 여성 (n=158)	논바이너리 지정성별여성 (n=466)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n=104)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의향이 없다	369 (41.7)	20 (12.9)	9 (5.7)	291 (62.3)	49 (46.7)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의향이 있으나 아직 시도한 적 없다	437 (49.4)	92 (59.4)	121 (76.6)	170 (36.4)	54 (51.4)
법적 성별 정정을 했다	61 (6.9)	36 (23.2)	21 (13.3)	4 (0.9)	0 (0.0)
현재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7 (0.8)	4 (2.6)	3 (1.9)	0 (0.0)	0 (0.0)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진행 중이다	5 (0.6)	2 (1.3)	1 (0.6)	0 (0.0)	2 (1.9)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법적성별 정정 진행하고 있지 않다	6 (0.7)	1 (0.6)	3 (1.9)	2 (0.4%)	0 (0.0)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 및 차별 경험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의향은 있으나 시도하지 않은 응답자 n=437

	전체 (n=437) 응답자 수 (%)	트랜스 남성 (n=92)		트랜스 여성 (n=121)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n=170)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n=54)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성확장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때문에	243(55.6)	60(65.2)	87(71.9)	71(41.8)	25(46.3)	71(41.8)	25(46.3)	25(46.3)	
법적 성별 정정 절차가 복잡해서	214(49.0)	52(56.5)	56(46.3)	81(47.7)	25(46.3)	81(47.7)	25(46.3)	25(46.3)	
법적 성별을 정정하면 학업이나 취업,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168(38.4)	40(43.5)	32(26.5)	77(45.3)	19(35.2)	77(45.3)	19(35.2)	19(35.2)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120(27.5)	24(2.16)	29(24)	53(31.2)	14(25.9)	53(31.2)	14(25.9)	14(25.9)	
성확장 관련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 때문에	102(23.3)	24(26.1)	27(22.3)	43(25.3)	8(14.8)	43(25.3)	8(14.8)	8(14.8)	
성확장 관련 의료적 조치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70(16.0)	13(14.1)	12(9.9)	36(21.2)	9(16.7)	36(21.2)	9(16.7)	9(16.7)	
가족 또는 연인, 파트너, 배우자 등의 반대로	56(12.8)	20(21.7)	14(11.6)	16(9.4)	6(11.1)	16(9.4)	6(11.1)	6(11.1)	
현재 혼인 중이기 때문에	5(1.1)	1(1.1)	0(0)	2(1.2)	2(3.7)	2(1.2)	2(3.7)	2(3.7)	
미성년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2(0.5)	0(0)	0(0)	1(0.6)	1(1.9)	1(0.6)	1(1.9)	1(1.9)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4(23.8)	9(9.8)	14(11.6)	62(36.5)	19(35.2)	62(36.5)	19(35.2)	19(35.2)	

일상생활

성별 분리 대중화장실 이용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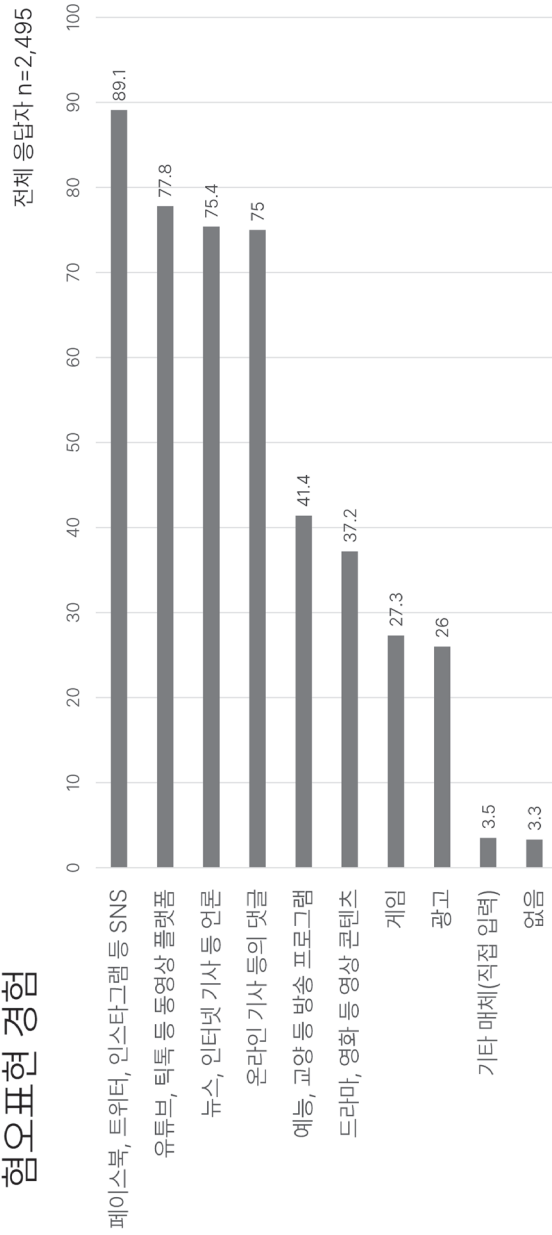
트랜스젠더 응답자 n=885

	전체 (n=877)	트랜스젠더 응답자			
		트랜스젠더남성 (n=154)	트랜스젠더여성 ^b (n=157)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c (n=462)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b (n=104)
(중복응답 가능)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미리 가져다 먹지 않았음	261 (29.8)	66 (42.9)	79 (50.3)	89 (19.3)	27 (26.0)
멀티도어로부터 남녀 공용 혹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했음	260 (29.7)	57 (37.0)	78 (49.7)	90 (19.5)	35 (33.7)
부담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생활장례상과 다른 성별의 시체를 이용했음	227 (25.9)	54 (35.1)	74 (47.1)	67 (14.5)	32 (30.8)
부담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음	213 (24.3)	51 (33.1)	70 (44.6)	63 (13.6)	29 (27.9)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음	114 (13.0)	24 (15.6)	20 (12.7)	55 (11.9)	15 (14.4)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음	74 (8.4)	20 (13.0)	20 (12.7)	6 (5.8)	28 (6.1)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했음	10 (1.1)	2 (1.3)	2 (1.3)	6 (1.3)	0 (0.0)
다른 사람이 경비원이나 경찰에 신고했음	8 (0.9)	1 (0.7)	1 (0.6)	8 (0.9)	0 (0.0)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음	1 (0.1)	1 (0.7)	0 (0.0)	0 (0.0)	0 (0.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8 (3.2)	7 (4.6)	4 (2.6)	14 (3.0)	3 (2.9)
위와 같은 경험 없음	384 (43.8)	40 (26.0)	38 (24.2)	262 (56.7)	44 (42.3)

Note. a. 무응답 8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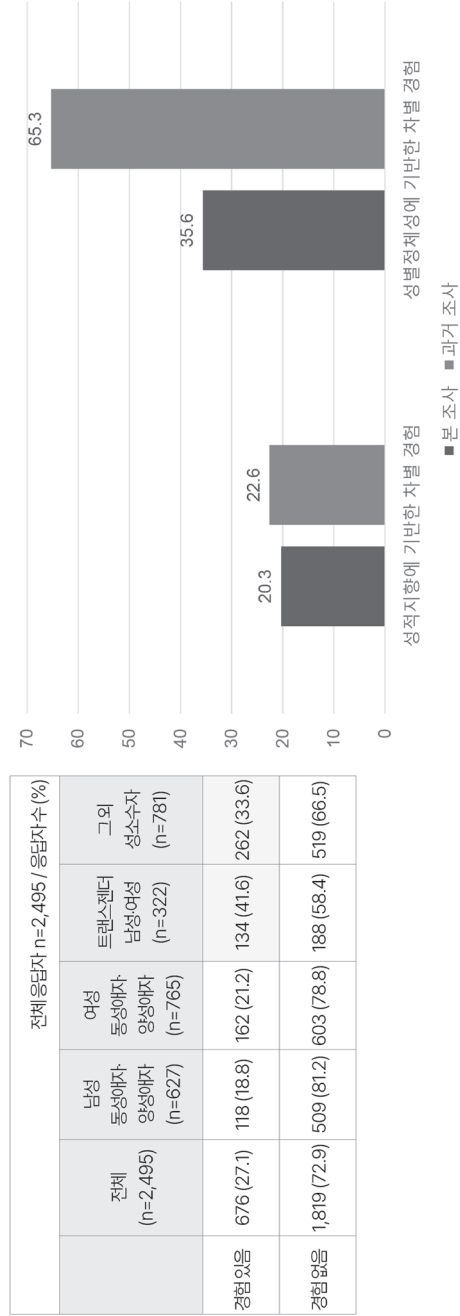
일상생활

혐오표현 경험



일상생활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최근 1년)



일상생활

최근 1년간 폭력 경험

전체 응답자 n=2,495

	여성		트랜스젠더		그외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627)	동성애자 양성애자 (n=765)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322)	남성 여성 양성애자 (n=781)	성소수자 (n=781)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101 (4.0)	27 (4.3)	13 (1.7)	35 (10.9)	26 (3.3)		

경험함*
 Note.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으로 구성된 보기들 합쳐 경험함으로
 표시함

최근 1년간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n=101

	전체 (n=96)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26)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13)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양성애자 (n=34)		그외 성소수자 (n=23)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중복응답 가능)										
신체적 폭력	40 (39.6)	10 (37.0)	5 (38.5)	16 (45.7)	9 (34.6)					
성폭력	27 (26.7)	8 (29.6)	0 (0)	13 (37.1)	6 (23.1)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모두	9 (8.9)	2 (7.4)	3 (23.1)	2 (5.7)	2 (7.7)					
기타	20 (19.8)	6 (22.2)	5 (38.5)	3 (8.6)	6 (23.1)					

Note. a. 무응답 5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3명



고용·노동 영역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성소수자로서 일상에서 차별을 겪은 상황, 장소

성소수자로서 일상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n=676

(중복응답 가능)	전체 ^a (n=633)	게이/바이 남성 ^b (n=107)	레즈비언/바이 여성 ^c (n=156)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d (n=130)	그 외 성소수자 ^e (n=240)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직장에서	190(30.0)	38(35.5)	56(35.9)	29(22.3)	67(27.9)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182(28.8)	14(13.1)	14(9.0)	65(50.0)	89(37.1)
학교에서	138(21.8)	16(15.0)	38(24.4)	30(23.1)	54(22.5)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127(20.1)	20(18.7)	34(21.8)	35(26.9)	38(15.8)
카페, 식당, 바 클럽 등에서	121(19.1)	24(22.4)	26(16.7)	29(22.3)	42(17.5)
일지리를 구할 때	119(18.8)	14(13.1)	18(11.5)	52(40)	35(14.6)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113(17.9)	14(13.1)	27(17.3)	38(29.2)	34(14.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89(14.1)	3(2.8)	2(1.3)	48(36.9)	36(15.0)
상담기관에서	69(11.0)	6(5.6)	12(7.7)	16(12.3)	35(14.6)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	62(9.8)	13(12.2)	14(9.0)	14(10.8)	21(8.8)
상점에서	58(9.2)	7(6.5)	12(7.7)	18(13.9)	21(8.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7(20.1)	15(14)	38(24.4)	16(12.3)	58(24.2)

Note. a. 무응답 = 43, b. 무응답 = 11, c. 무응답 = 6 d. 무응답 = 4 e. 무응답 = 22

고용·노동 영역

구직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려

최근 5년 동안 구직활동 경험에 있는 응답자 n=1,943

	전체 ^a (n=1,940)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471)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597)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n=251)	그외 성소수자 ^c (n=621)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매우 영향을 미쳤다.	260 (13.4)	64 (13.6)	43 (7.2)	86 (34.3)	67 (10.8)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500 (25.8)	13 (28.5)	121 (20.3)	91 (36.3)	154 (24.8)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84 (30.1)	144 (30.6)	178 (29.8)	37 (14.7)	225 (36.2)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96 (30.7)	129 (27.4)	255 (42.7)	37 (14.7)	175 (28.2)

Note. a. 무응답 3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2명

고용·노동 영역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

최근 5년 동안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n=1,943

	전체 (n=1,936)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그 외 성소수자*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중복응답 가능)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력이나 개인적 배경을 숨겼다	912 (47.1)	213 (45.2)	239 (40.2)	147 (58.6)	313 (50.5)				
자업신业的 폭을 스스로 제한했다	581 (30.0)	152 (32.3)	109 (18.4)	150 (59.8)	170 (27.4)				
내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	465 (24.0)	64 (13.6)	109 (18.4)	101 (40.2)	191 (30.8)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특정 직종/업계를 피했다	407 (21.0)	119 (25.2)	75 (12.6)	112 (44.6)	101 (16.3)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 출신학교, 병역사항 기재, 사진 첨부 등)	139 (7.2)	19 (4.0)	5 (0.8)	74 (29.5)	41 (6.6)				
주민등록증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27 (6.6)	2 (0.4)	1 (0.1)	89 (35.5)	35 (5.7)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84 (4.3)	26 (5.5)	24 (4.0)	4 (1.6)	30 (4.8)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우려해 직장을 옮겼다	64 (3.3)	15 (3.2)	9 (1.5)	14 (5.6)	26 (4.2)				
면접 과정에서 성장채상에 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	59 (3.1)	6 (1.3)	7 (1.2)	22 (8.8)	24 (3.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거나 취소됐다	47 (2.4)	3 (0.6)	3 (0.5)	30 (12.0)	11 (1.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47 (2.4)	8 (1.7)	15 (2.5)	9 (3.6)	15 (2.4)				
위와 같은 경험 없음	621 (32.1)	153 (32.5)	255 (42.9)	26 (10.4)	101 (16.3)				

Note. a. 무응답 7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3명

고용·노동 영역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가 여중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바이오 쪽은 초등학교부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외국계 회사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주민번호를 안 물어보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서류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 4학년 2학기 중간에 한 6~7군데를 붙었는데, 어쨌든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신분증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신분증을 드렸더니, 분명 최종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다 취소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취직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 거짓말처럼 정정이 끝나고 주민번호가 딱 바뀌고 난 이후에는 회사 면접을 똑같이 10개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FGI 참여자 14, 32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성



고용·노동 영역

일터에서 정체성 숨기기 행동

최근 1년 동안 수입 활동을 한 응답자 n=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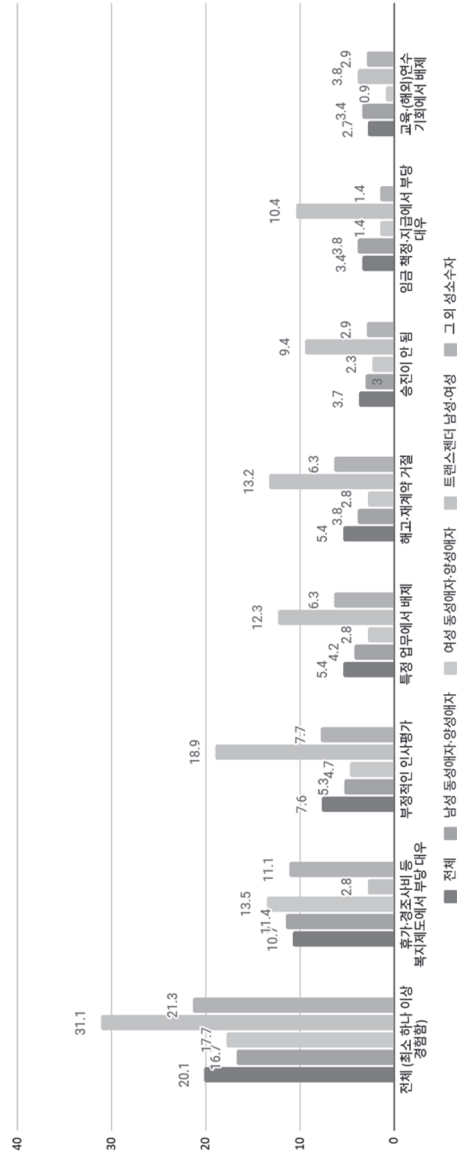
(중복응답 가능)	전체 ^a (n=1,881) 응답자수 (%)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외 성소수자 ^b (n=582) 응답자수 (%)
		양성애자 ^c (n=523)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양성애자 ^c (n=555)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남성여성 ^d (n=221)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동성의 연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1,015 (54.0)	328 (62.7)	390 (70.3)	59 (26.7)	238 (40.9)			
사회적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924 (49.1)	232 (44.4)	287 (51.7)	86 (38.9)	319 (54.8)			
옷차림에 주의했다	561 (29.8)	152 (29.1)	109 (19.6)	102 (46.2)	198 (34.0)			
목소리나 태도를 조절했다	539 (28.7)	228 (43.6)	60 (10.8)	99 (44.8)	152 (26.1)			
가족이나 파트너의 시선을 숨겼다	513 (27.3)	161 (30.8)	208 (37.5)	34 (15.4)	110 (18.9)			
외모 표현을 주의했다	480 (25.5)	133 (25.4)	86 (15.5)	88 (39.8)	173 (29.7)			
사내 친목모임을 피했다	344 (18.3)	113 (21.6)	78 (14.1)	47 (21.3)	106 (18.2)			
위와 같은 경향이 없다	291 (15.5)	71 (13.6)	75 (13.5)	32 (14.5)	113 (19.4)			
화장실 사용을 피하거나 나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했다	232 (12.3)	8 (1.5)	1 (0.2)	116 (52.5)	107 (18.4)			
업무 관련 행사에 가족을 데려오지 않았다	95 (5.1)	29 (5.5)	32 (5.8)	13 (5.9)	21 (3.6)			
업무 관련 행사나 출장을 기피했다	68 (3.6)	13 (2.5)	5 (0.9)	28 (12.7)	22 (3.8)			

Note. a. 무응답 17명, b. 무응답 4명, c. 무응답 8명, d. 무응답 3명, e. 무응답 2명

고용·노동 영역

성소수자를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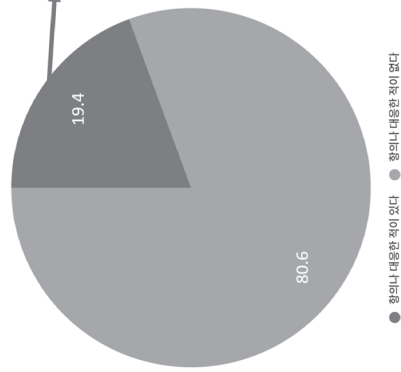
최근 1년동안 수입활동을 한 응답자 n=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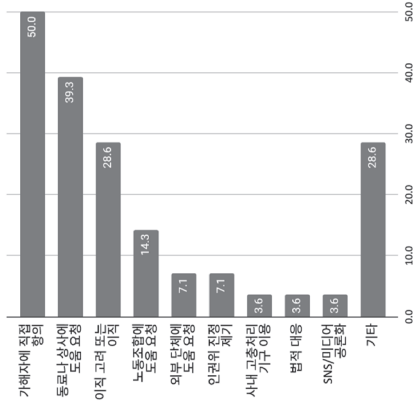
고용·노동 영역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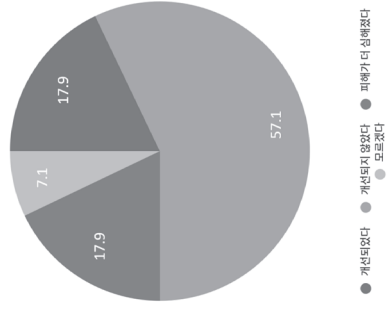
직장 내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n=144)



대응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



대응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



● 개인적이었다 ● 개인적이지 않았다 ● 피해가 더 심해졌다 ● 도보였다

고용·노동 영역

대응하지 않은 이유

직장 내 차별 경험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 n=116

(중복응답가능)	전체 (n=116) 응답자수 (%)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78 (73.6)	25 (86.2)	18 (66.7)	14 (70.0)	21 (70.0)				
신고해도 물러나는 게 없어서	62 (58.5)	20 (69.0)	13 (48.1)	14 (70.0)	15 (50.0)				
커리어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53 (50.0)	17 (58.6)	13 (48.1)	8 (40.0)	15 (50.0)				
시간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50 (47.2)	13 (44.8)	12 (44.4)	9 (45.0)	16 (53.3)				
공공연계에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50 (47.2)	15 (51.7)	16 (59.3)	6 (30.0)	13 (43.3)				
사람들이 시간을 진지하게 여겨지 않을 것 같아서	46 (43.4)	12 (41.4)	11 (40.7)	8 (40.0)	15 (5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지 못해서	34 (32.1)	7 (24.1)	5 (18.5)	10 (50.0)	12 (40.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33 (31.1)	8 (27.6)	7 (25.9)	9 (45.0)	9 (30.0)				
대응할 만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9 (8.5)	5 (17.2)	1 (3.7)	1 (5.0)	2 (6.7)				

직장 내 차별 경험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 n=116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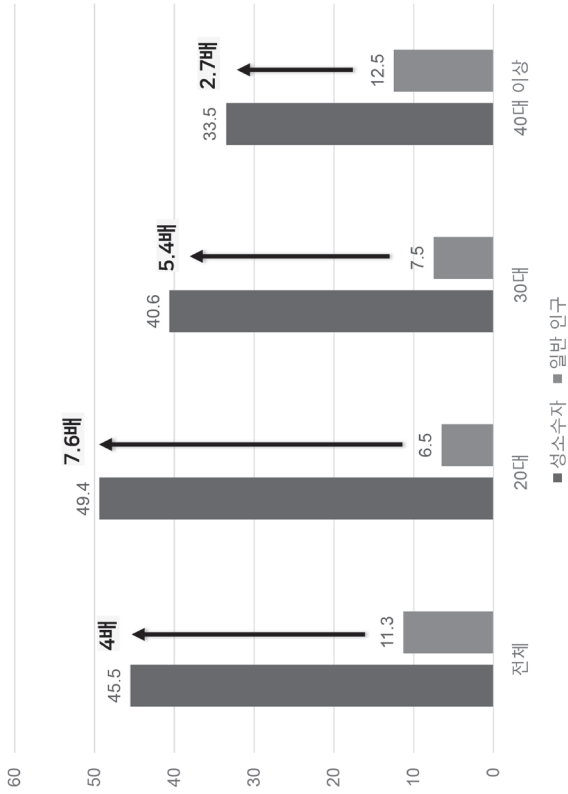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1주일)

	전체 응답자 n=2,495			
	전체 (n=2,486)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627)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n=759)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n=322)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매우 건강한 편이다	235 (9.5)	91 (14.5)	80 (10.6)	19 (5.9)
건강한 편이다	1,012 (40.9)	275 (43.9)	366 (48.5)	115 (35.7)
보통이다	793 (32.0)	180 (28.7)	232 (30.8)	102 (31.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02 (16.2)	73 (11.6)	72 (9.5)	77 (23.9)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4 (1.8)	8 (1.3)	9 (1.2)	9 (2.8)
				그 외 성소수자 ^c (n=778)
				응답자 수 (%)
				45 (5.8)
				256 (33.1)
				279 (36.0)
				180 (23.2)
				18 (2.3)

Note. a. 무응답 9명 b. 무응답 6명 c. 무응답 3명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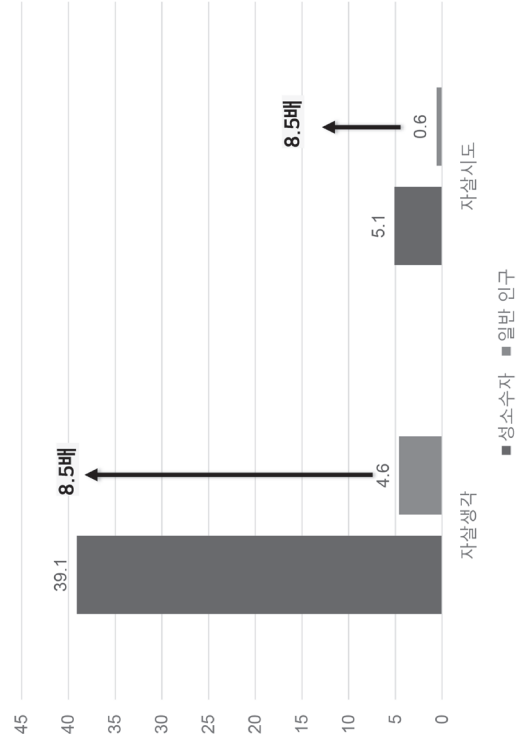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n=2,495 /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그외
전체 (n=2,389)	1,095 (45.8)	185 (30.9)	198 (63.7)	432 (57.9)
우울 증상 경험 ^a	185 (30.9)	280 (37.8)	198 (63.7)	432 (57.9)
성소수자 ^b	185 (62.7)	280 (76.5)	198 (322)	432 (781)

Note. a. CES-D 20개 문항(0-3점) 합계 점수가 16점(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 b. 우울 점수 10점 이상. c. 우울 점수 22점 이상. d. 우울 점수 17점 이상. e. 우울 점수 35점 이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1주일)



전체 응답자 n=2,495

전체* (n=2,494)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그외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자살생각	973 (39.1)	143 (22.8)	251 (32.9)	168 (52.3)	411 (52.7)	356 (14.3)	24 (3.8)	91 (12.0)
자살시도	128 (5.1)	18 (2.9)	33 (4.3)	34 (10.6)	43 (5.5)	128 (5.1)	18 (2.9)	3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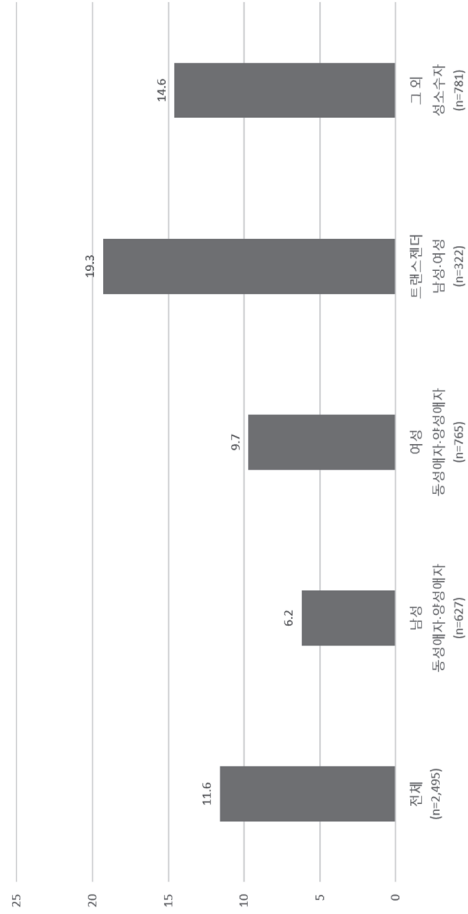
Note. a. 무응답 1명

건강상태

응답 상태

응답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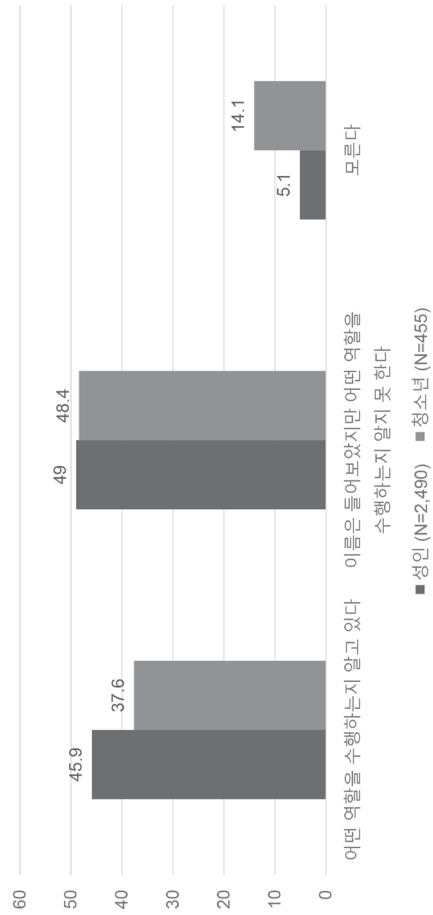
단위: %



*평소 외출 수준을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출근한다'부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까지 8단계의 보기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선택하도록 한 뒤, 5~8단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외출 수준을 은둔 상태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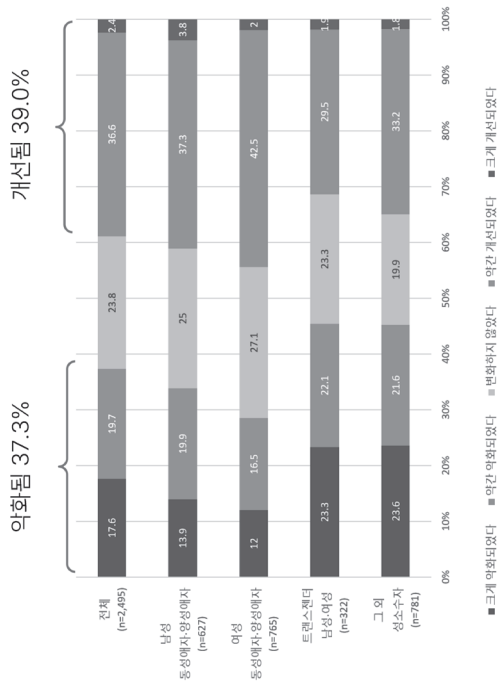
사회적 관용 및 정치적 요구 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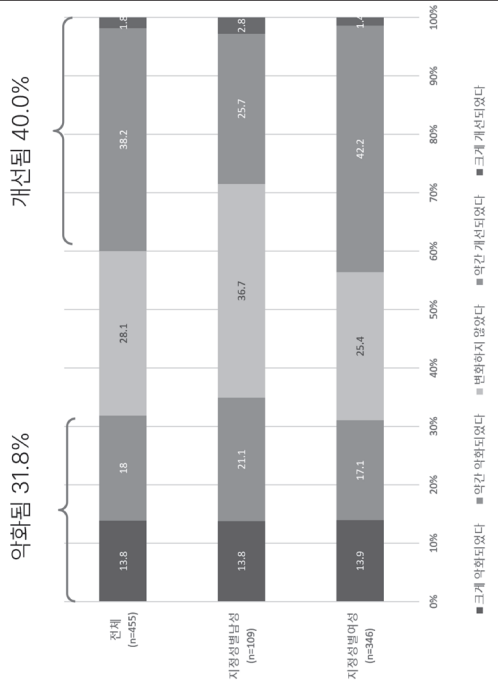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

성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이유

(중복응답가능)	성인 ^a (n=926) 응답자수(%)	청소년 (n=145) 응답자수(%)
정치인 및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발언 때문	765 (82.6)	94 (64.8)
공인 및 사회 지도층의 지지기 부족해서	568 (61.3)	78 (53.8)
시민사회의 지지기 부족해서	412 (44.5)	99 (68.3)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의 가시성과 참여가 부족해서	284 (30.7)	75 (51.7)
기본 법률 및 정책이 지켜지지 않아서	216 (23.3)	21 (14.5)
부정적인 법률 및 정책이 도입되어서	201 (21.7)	27 (18.6)
기타	192 (20.7)	23 (15.9)

Note. a. 무응답 3명, b. 무응답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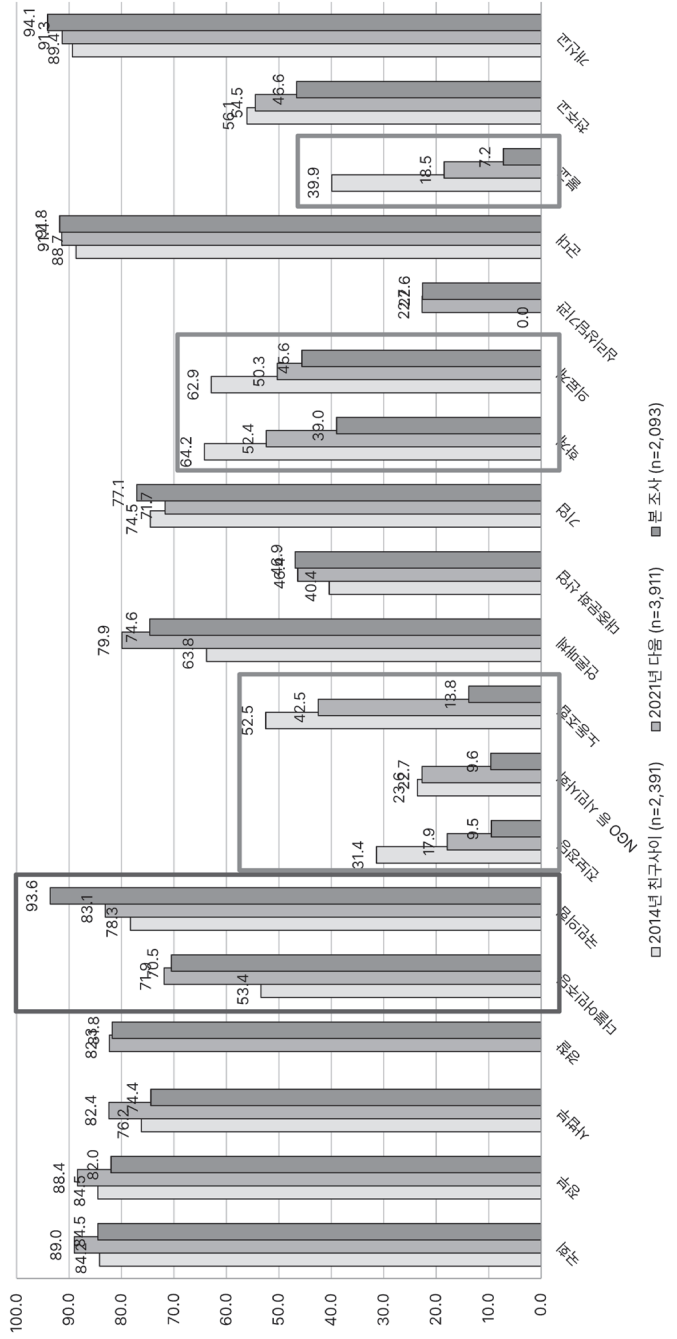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이유

(중복응답가능)	성인 (n=968) 응답자수 (%)	청소년 (n=182) 응답자수 (%)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의 가시성과 참여로 인해	809 (83.6)	145 (79.7)
시민사회의 지지로 인해	555 (57.3)	89 (48.9)
공인 및 사회지도층의 지지로 인해	134 (13.8)	17 (9.3)
정치인 및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발언 때문에	80 (8.3)	10 (5.5)
긍정적인 법률 및 정책이 도입되어서	51 (5.3)	9 (4.9)
기존 법률 및 정책이 잘 시행되어서	30 (3.1)	2 (1.1)
기타	104 (10.7)	20 (11.0)

향후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변화 예상

단위: 응답자수 (%)	성인 (n=2,495)	청소년 (n=447)
법률과 정책		
악화될 것이다*	254 (10.2)	35 (7.8)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1,056 (42.3)	175 (39.2)
개선될 것이다*	1,175 (47.1)	237 (53.0)
장치인 및 정당		
악화될 것이다*	565 (22.7)	72 (16.1)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1,181 (47.3)	228 (51.0)
개선될 것이다*	736 (29.5)	147 (32.9)
언론 및 대중매체		
악화될 것이다*	569 (22.8)	105 (23.5)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862 (34.6)	164 (36.7)
개선될 것이다*	1,050 (42.1)	178 (39.8)
단위: 응답자수 (%)	성인 (n=2,495)	청소년 (n=447)
시민사회		
악화될 것이다*	332 (13.3)	75 (16.8)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545 (21.8)	124 (27.7)
개선될 것이다*	1,608 (64.4)	248 (55.5)
학교 등 교육기관		
악화될 것이다*	512 (20.5)	69 (15.4)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1,167 (46.8)	257 (57.5)
개선될 것이다*	795 (31.9)	121 (27.1)
일상 속 사람들의 태도		
악화될 것이다*	403 (16.2)	78 (17.5)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772 (30.9)	140 (31.3)
개선될 것이다*	1,306 (52.3)	229 (51.2)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법적 혼인 의향

전체 응답자 n=2,495

	전체 (n=2,487)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a (n=625)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764)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n=322)	그 외 성소수자 ^c (n=776)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현재 또는 미래의 배우자와 혼인고를 할 의향이 있다.	951 (38.3)	258 (41.3)	385 (50.5)	106 (32.9)	202 (26.0)
현재 또는 미래의 배우자와 혼인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다.	703 (28.3)	213 (34.1)	241 (31.6)	67 (20.8)	182 (23.4)
아직 잘 모르겠다 / 고민 중이다.	388 (15.6)	105 (16.8)	84 (11.0)	55 (17.1)	144 (18.5)
혼인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62 (6.5)	45 (7.2)	52 (6.8)	16 (5.0)	49 (6.3)
해당 없음 (동성애에 관심이 없음)	283 (11.4)	4 (0.6)	2 (0.3)	78 (24.2)	199 (25.6)

Note. a. 무응답 8명, b. 무응답 2명, c. 무응답 1명, d. 무응답 5명

발표 4.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조혜인(공동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조혜인(공동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 | |
|----------------|------------------|
| I. 가시화와 인식 개선 | VI. 국가기관 |
| II. 차별 및 혐오 금지 | VII. 보건의료 |
| III. 교육 | VIII. 성별의 법적 인정 |
| IV. 노동 | IX. 혼인평등 및 가족구성권 |
| V. 시설 및 재화·용역 | |

I. 가시화와 인식 개선

1. 정책대상으로서 성소수자 집단의 가시화
 - 성소수자 인구 대상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체계
 - 각 행정기관 조사통계에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문항 포함 (인구주택총조사 등)
 - 정부 부처의 각종 실태조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조사 진행
 - 국가데이터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사 관련 통계 표제 연구·개발
2.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 인식 개선
 -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 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
 - 미디어 다양성 조사 항목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
3.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 캠페인

II. 차별 및 혐오 금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명 및 대책 표명
 - 성소수자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 파악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세부 지침 마련

III. 교육

1.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교육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 국가교육발전계획, 학생인권기본계획 등 국가의 교육 관련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과 국가의 책무를 포함
 - 교육부 장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 의지 표명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성적지향·성별표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및 국가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 책무 명시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 성소수자 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의 보장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괴롭힘 방지법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상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 성소수자 친화적인 인권침해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자원 개발: 성소수자 학생 커뮤니티 지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 등

III. 교육

- 3.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비차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담은 교육과정 개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신체 다양성 문제에 대한 다양성의 관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교과과정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
 -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등 개정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지 않는 학교시설, 학교 프로그램 시행
 - 성소수자 학생의 탈학교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성소수자 학생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IV. 노동

1. 성소수자 고용차별 규제 입법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관계 법령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2. 고용 기회의 평등
 - 성소수자 채용 차별 모니터링 및 세부지침 마련
 - 지원자에게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고용 관행 개선
3. 직장 내 차별금지
 - 성소수자가 겪는 직장 내 차별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기업 내규 및 포용 정책 권장
 -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 존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대중 캠페인 실시

IV. 노동

- 4. 직장 내 성소수자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 입안 및 세부 지침 마련
 -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장 내 성평등교육'으로 확대·개편하여 성소수자 인권 포함
- 5. 직장 내 동성부부에 대한 차별 해소
 - 동성배우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수급권 보장, 「소득세법령」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 직장에서 동성배우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침이 마련되도록 지원
- 6. 직장 내 트랜스젠더 노동자 지원
 - 트랜지션 등 직장 내 트랜스젠더 복리후생 지침 마련
 - 트랜지션 관련 병가 및 의료 지원 등 복지 제공
 - 트랜스젠더 노동자 사생활 보호

V. 시설 및 재화·용역

1. 화장실 등 성별분리시설
 - 성별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용 차별 방지 법제 마련 . 사업장, 학교 등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성중립화장실 시범사업 진행과 이를 위한 법령 정비, 홍보와 교육
2. 광장, 공원 등 공공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지침 마련
3. 주거시설
 - 주거차별 실태 파악 및 주거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다양한 가족 및 가구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
4. 상업시설 및 재화·용역
 - 재화·용역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소비자 차별금지 법제 마련

VI. 국가기관

1. 일반 행정

- 공무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시행
- 성소수자 혐오선동 민원 차단 정책 마련
- 성소수자를 지자체의 인권 및 사회복지정책 대상으로 수용

2. 군대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군인 복무 지침 마련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트랜스젠더 병리화 요건 삭제

3. 수사·재판

-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수사준칙 마련 •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VII. 보건의료

1. 비병리화와 차별금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정비
 - '전환치료' 금지 및 전환치료를 아동학대로 간주
 - 의료기관 내 시설 및 의료인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행위 예방 및 금지
 - 팬데믹 상황에서서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 인터섹스에 대한 정상화 수술 등 보건의료 실태 파악
2. 트랜스젠더의 의료서비스 접근
 - 통합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르몬요법 가능 1차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확대
 -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적용

VII. 보건의료

3. 정신건강 증진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상 대상별 예방대책 수립에 성소수자를 포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 성소수자를 우선 인구집단으로 설정, 자살 예방을 위해 특화된 개입 마련
- 성소수자들이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VIII. 성별의 법적 인정

1.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성별인정법 제정
 - 법적 성별 인정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의료적 조치, 이혼, 나이 요건 등 인권침해적인 요건 없이 법적 성별 인정
2.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성별정정 절차 개선
 - 대법원 예규 제6조 참고사항 삭제
 - 대법원 예규에 성별정정 심리 기간 명시, 인권침해적 심문 금지
3. 제3의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 논바이너리와 인터섹스를 위한 제3의 성별의 법적 인정
 - 제3의 성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IX. 혼인평등 및 가족구성권

1.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법제화
 -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상 '부부(부모)'에 '동성부부(부모)'도 포함된다고 명시
2.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정비
 - 혼인 외 다양한 돌봄 관계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 의료, 주택, 조세,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를 이성 부부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보장
3. 성소수자의 부모가 될 권리 보장
 - 친양자 입양 요건을 혼인 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성부부의 공동입양 보장
 - 혼인한 이성 부부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보조생식술 등 지원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

연구의 활용

1.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
 3. 학술적 논의를 위한 추가 분석 및 논문 게재
- 인권위원회가 각 기관에 즉각 권고할 수 있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연구의 활용- 주요 정책 과제

차별 일반

기관	과제
대법원·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정정 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인정법 제정 • 현행 대법원 예규 방식에서 법률 제정으로 전환 • 성별정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혐오 민원 대응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르몬 치료 급여화 추진 (진단 및 처방, 약제비, 모니터링 검사) • 성확정수술 단계적 급여 적용 • 트랜지션 의료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의 활용- 주요 정책 과제

교육

기관	과제
교육부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교원 대상 성소수자 학생 이해 및 지원 역량 강화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원 인식 개선 정도 연차별 모니터링 •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시 관련 지표 포함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인권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 성소수자 인권침해 보호, 지원, 상담 내용 포함 인권센터 기능 확대 • 정기적인 대학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대학 자체 설정 성과지표에 인권, 다양성, 포용성 관련 지표 포함 권장 • 우수 사례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지표 개선

연구의 활용 - 주요 정책 과제

고용·노동

기관	과제
성평등가족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표준안 개정 • 성희롱 예방교육에 성소수자 인권보호 포함 • 이웃팅, 혐오표현 등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 성별과 장애 외에 '기타 다양성 지표' 보고하도록 권고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G 가이드라인 지표 개선

연구의 활용 - 주요 정책 과제

정신건강

기관	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수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보완 및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개정 시 성소수자 지원계획 반영 전환치료 금지 및 성소수자 상담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심리지원

혼인·가족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
----	--

연구의 활용 - 주요 정책 과제

일반행정

기관	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혐오 민원 대응 지침 마련 • 혐오와 차별 조장 민원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 • 전 공무원 대상 혐오표현 대응 및 성 다양성 이해 교육 의무화 • 약성 민원인으로부터 법적 보호 제공 및 업무 수행 보장 위한 기관장 책임 강화 • 「정부민원안내센터운영규정」에 근거 마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민원 처리 조례에 차별금지원칙 포함
국회·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혐오 민원 대응 근거 마련

토론 1.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

토론 2. 성소수자 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여수진(노무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토론 3. 성소수자의 의료실태와 개선 방안

윤현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토론 4. 트랜스젠더와 신분증, 그리고 선거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

-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만 한다.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땡땡)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땡(이하 땡땡)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2014년 설립이 추진되었고, 이듬해 상담을 시작해 2026년 현재 12년 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실태조사 결과는 땡땡의 활동 목표를 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객관적 정보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98.0%였고, 교사(20.0%)와 또래 학생(54.4%)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응답자의 80.6%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자살 시도(19.4%)와 자해 경험(16.1%)도 매우 높았다.

이후 10년이 지났고, 2025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가 다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인권조약기구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이슈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진일보한 권고를 하였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 결정이나 판례 등이 이어졌지만,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움직임이 전혀 없다 보니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오히려 민원을 빙자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력에 눈치만 보며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정책이 눈에 띄게 후퇴하였다. 교육부는 2015년 제정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과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성적지향,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 용어 등을 삭제하며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 다른 정책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서울시가 공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TF 회의 결과에서도 민간 위탁 운영법인이 선정되면,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 용어 등을 사용해선 안 되고,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의 근거가 된 것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였다. 이 외에도 서울, 충남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위상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경기, 충남 지역의 일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관련 도서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폐기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사건이 발생¹⁾하기도 하였다.

딩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그 위기를 깊이 보려 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도 전혀 없는 사회 분위기를 지난 10년 동안 확인해 왔다. 하지만, 7천 건이 넘는 상담과 위기 지원의 기록들,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담 건수, 가장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정신건강 및 심리 문제' 이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존재를 감추고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의 무능함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실천적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제언이 단 하나라도 추진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 결과에 관한 토론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만 하는 정책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도 익숙한 공간이다. 여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교과과정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또래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수용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학교에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지 말지 고민하기도 하고,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경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본능을 깨닫기도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조사 응답자 중 79.9%가 학교를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리는 장소로 선택했고,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중 77.9%가 차별이 학교에서 벌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장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성인 성소수자 76.5%가 직장을 선택한 것과도 다르다. 일상적 차별을 경험했지만 79.8%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이유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69.6%),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53.2%)라고 했으며, 차별에 대응 하더라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80%는 교과교육 내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성소수자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방식의 교육이었

1) 윤근혁 기자, 『"역대급 검열"...사라진 학교 도서 5868권, 학교당 2.4권꼴』, 교육언론 창, 2024.10.22.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9>

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2.6%가 성별에 따른 교복, 반 번호, 줄서기, 체육활동 등을 구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24.5%는 각종 신청서나 OMR 답안지에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성별을 기입하는 것 때문에, 20.7%는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혐오표현과 괴롭힘 경험 역시 10년 전 연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하였다. 응답자의 31.2%가 교사로부터, 60.4%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공개적인 대응을 선택하지 않고 참거나 침묵했다. 불과 9.2%만이 직접 항의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중 72.4%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청소년 조사 응답자 중 17.4%가 탈학교 경험이 있었다. 지난 3월 2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2024년 2.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다고 했고,²⁾ 초·중·고 평균 1.0%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업중단율은 17배가 높다.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이유로 탈학교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유로 학교 부적응을 했다고 응답한 답변 또한 상당히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청소년 조사 응답자 중 83.4%가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상하는 질문에 법률과 정책, 시민사회, 일상 속 사람들의 태도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응답자 72.9%가 더 나빠지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하였다. 이는 '정치인 및 정당'보다 높은 수치이고, 기대가 가장 낮은 영역이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어렵고 두려운 공간이고, 각자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거나 아니면 탈출해야 하는 곳이다. 변화 가능성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곳에서 의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수년간 버텨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96.5%)와 무기력 상태(93.6%)를 느끼고 있고, 69.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절망과 고통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소수자 혐오와 괴롭힘을 용인해 온 교육 정책이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

연구진들은 교육 영역의 변화를 위한 제언으로 1)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교육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2) 성소수자 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의 보장, 3)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2) 조수빈 기자, 「고교 학업중단율 다시 2%대... 자퇴 늘고 검정고시로」, 뉴스1, 2026.3.23.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109604>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모두 시급히 필요한 과제들이다. 청소년 조사 응답자들도 학교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55.8%)을 비롯해 성소수자 관련 혐오·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48.4%), 학교 교사의 성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42.9%)고 하였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2021, 휴먼라이츠워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학교 환경의 증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별과 괴롭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입법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 인권교육 강화로도 변화의 시작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도 살펴야 한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인해 탈가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실천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단체로서, 위기 상황이 학교 밖, 가정 안팎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교육 영역과 달리 제도적 개입이 쉽지 않은 영역이고,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집을 탈출해 가정 밖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역시 원가정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가정 밖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세심히 들여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조건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리는 장소가 학교, 학원 다음에 집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 차별을 경험하는 장소로 '집이나 가정'을 포함했다라면, 성인 성소수자와 달리 가정에서 취약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이 좀 더 드러났을 것이다. 현재 부모님의 성소수자 정체성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표 126)에 응답자의 44.1%가 자신의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무시한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가족으로부터의 경험(표 127)에서도 회피, 강요, 언어적 폭력, 불이익 협박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아 정체성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복지 영역'을 중요한 카테고리 포함하고, 기존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이용하며 발생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땃동의 경우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는 만큼,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숨긴 채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받거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노출되기도 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제재를 받거나 아예 입소나 시설의 이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일시 청소년쉼터, 중 단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의 침실, 화장실, 목욕실 이용 성별 구분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이는 쉼터 입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과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분석과 제언이 필요하다.

땡땡 상담 건수가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들의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전체 상담 건수(599건) 대비 70.8%(425건)가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 상담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 2년 사이 16%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상담 이슈 중 ‘트랜지션’이나 ‘디스포리아’ 항목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가족과의 갈등, 일자리, 진로와 학업, 대인관계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매우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성확정 의료조치 경험과 일상생활에서 성별 분리 공중화장실 이용 경험으로 한정해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며 연구 참여자의 성별 정체성과 응답자의 35.2%가 트랜스젠더 참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차별의 경험이나 커밍아웃 여부,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다른 항목에 있어서 지정 성별 남녀만이 아니라 성별정체성에 따른 응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트랜스젠더 청소년 차별금지를 위한 제언 또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14세 미만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상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조사 응답자의 정체성 인식 및 수용 시기를 살펴보면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기는 평균 13.1세, 정체성을 수용하는 시기는 14.5세로 조사되었다. 성인 응답자도 청소년 응답자보다 다소 높지만,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기는 평균 14.5세이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12.8세로 조사되었다. 정체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담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기 시의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정체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14세 미만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상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띠동 사례를 소개하자면, 14세 미만 성소수자 아동이 띠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가명으로 참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안 부모가 띠동에 찾아와 항의하였고, 결국 서울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띠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았다) 당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4세 미만의 성소수자 아동을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로 인식되는 상황에선 상담을 받을 수 없고,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성소수자 아동의 상담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하는 과제들

이번 연구를 통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실태를 재차 확인하였다.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무대응과 무대책이 만든 당연한 결과지만, 아무런 변화도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 오기도 한다. 하지만, 곳곳이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있는 한 더 나은 사회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OMR 답안지 성별 표기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당사자가 된 청소년 성소수자들,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련회 참석을 제한당했던 청소년 당사자가 학교에 맞섰던 용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참고삼아 각 정부 부처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여수진(노무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10여 년 만에 성소수자의 노동 현실을 폭넓게 다룬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퀴어동네 역시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¹⁾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연구에서 관찰된 내용을 참고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내용 중 특히 ‘대안’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 개정 대안의 한계와 구체적 정책목표의 중요성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중첩적으로 두터운 보호와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을 통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는 역할을 주되게 하고 있지만 그 외, 승진·해고·임금 등 고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조직문화와 가부장제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누적되어 발생하는 이러한 차별은 인식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워 고용상 성차별의 노동청 신고율 및 기소율이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 이용률이 매우 미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큰 틀의 입법 과제와 병행하여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나 개별적 금지법이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제이며 실질적인 변화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터를 당장

1) 김한울 외(2025),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직장 내 성소수화 가시화의 물결도 거세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 차별적 괴롭힘 규율 마련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었던 지점 중 하나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직장 내 경험 간의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성소수자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일반 인구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퀴어동네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반 인구의 5배의 유병률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성소수자 노동자의 직장 내 폭력 경험률을 일반인구 집단과 직접 비교해 보았는데, 직전 1달간 폭력 경험률은 31.1%로 일반인구집단(6.5%) 대비 약 5배였으며²⁾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은 3.44배가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정체성 관련 직장지원 포기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증 유병률이 약 1.6배, 직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약 2.4배, 직장문화가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경우 유병률이 3.8배 높았습니다. 성소수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실질적인 건강상 피해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대안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한 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을 명시하고 유형을 제시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언적 효과와 함께 각 사업장마다 실질적인 피해 판단기준이 되어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 없이 고용노동부 지침의 변화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지침에는 성소수자 관련 괴롭힘 사례로 ‘아웃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퀴어동네는 『퀴어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을 6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³⁾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판단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표준취업규칙에 차별금지나 차별적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2) 언어폭력은 3.9배,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23배, 위협 11배, 모욕적 행위는 6배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경험률에서는 일반인구집단과 약 2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특히 왕따/괴롭힘은 71배로 나타났다.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의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아웃팅 혹은 아웃팅에 대한 암시, ②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옷차림·외모 강요, ③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추측·소문·떠보기, ④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⑤본인이 정체화한 성과 다른 성으로 취급, ⑥성별고정관념 이유로 업무 배제. (여수진 외(2003), 『퀴어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소수자에 관한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및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도록 한다면 기본적인 규율과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 : 경조휴가와 돌봄휴가부터

이번 실태 조사에서 성소수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직장 내 차별로 경조휴가 등 복지제도 차별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성소수자 노동자 가시화나 커밍아웃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은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경조휴가는 법령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개정 없이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결혼휴가는 많은 기업이 '청첩장 제출'만으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식을 하는 근로자들이 결혼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휴가 사용 사례 확산이나 캠페인, 분쟁 지원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과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게 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안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돌봄휴가를 동성 동반자에게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보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출산 휴가 제도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생각하면 동성동반자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근거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원 체계 : 성소수자 지원 위한 노동센터 추진

차별금지 내규 마련, 병가제도, 유니폼 성별구분 폐지, 모두의 화장실 등 많은 부분이 회사 내 제도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인사팀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 해보면 성소수자 친화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소수자들은 드러나지 않고, 설득해야 할 임원진은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전담 노동센터를 설립하여 개별노동자 지원과 함께 직장 내 성소수자 친화 정책을 주도하는

4) 여성고용정책과 - 3563, 2018.8.22.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기업 내규 및 포용 정책 권장’,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 존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대중 캠페인 실시’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친화적 일터 컨설팅 및 인증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한다면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 제도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이미 운영중인 자치구별 노동자센터와 협업하여 사업별, 지역별로 단계적 추진을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직화를 위한 첨언 : 노동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요구와 집단적 조직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가시화가 좀처럼 힘든 성소수자를 조직화하는 일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성소수자 90% 이상이 일터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퀴어동네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만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커밍아웃은 못 할지언정,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이미 성소수자로서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리상담사로서 성소수자를 위한 심리상담 세미나를 열고, 미술 교사로서 아이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긍정하도록 돕는 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세계가 퀴어라는 정체성과 연결될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한 연구참여자가 직종별로 성소수자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는데 이에 깊이 공감하며,⁵⁾ 전교조가 만드는 ‘교실의 성소수자를 만나는 법’, 보건의로 노동자들이 만드는 ‘성소수자 환자를 만나는 법’, 돌봄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성소수자 돌봄 안내서’를 상상해 봅니다. 스스로의 권리쟁취도 중요하지만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삶의 실천이 가능한 공간, 직장에서 받는 억압을 완화하는 공간으로서의 노동조합과 조직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시도가 직종별·산별 단위로 확산된다면, 성소수자가 차별의 피해자가 아니라 각자의 노동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재위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광장에서 주축이 되었던 성소수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누구나지회를 탄생시켰고, 전교조에는 성소수자 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 본 실태조사 보고서 177쪽, 하단, “사람들 만나는 직업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의무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가령 정신보건에서 1년만 일해도 성소수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성소수자의 의료실태와 개선 방안

윤현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1. 성소수자의 건강 격차

국내 성소수자의 건강은 일반인구집단의 건강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다.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우울 증상이나 자살 생각 등과 같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 위해 행동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다. 특히,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우울 증상을 보고할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으며,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여성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일반 여성과 비교해 부정적 자가 건강평가와 흡연 및 위험 음주의 유병률이 훨씬 높고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더 낮게 나타난다.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일반인구집단의 건강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가 건강평가와 근골격계 통증, 우울 증상, 자살 생각 및 시도의 측면에서 트랜스젠더집단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큰 건강 격차를 보인다.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하는 트랜스젠더가 2배 이상 많으며,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4배 이상, 우울 증상 및 자살 관련 행동과 같은 정신건강 이상이 6배 이상 높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흡연과 위험 음주를 더 많이 한다.

해외에서는 좀 더 다양한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성적지향에 따른 건강 격차를 분석한 한 해외 논문은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불면증,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 격차에 대해 분석한 또 다른 논문은 시스젠더에 비해 트랜스젠더가 심근경색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1.7배 높다고 밝혔다.

2. 성소수자의 의료 경험

트랜스젠더는 성별확정을 위한 의료적 조치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에 가기 전 호르몬 요법과 성별확정 수술과 같은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부터 쉽지 않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학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이지만,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 정보를 물어본다고 응답한 이들은 33%에 불과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성별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지 알게 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받기는 쉽지 않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가 호르몬치료와 성별확정 수술을 받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성별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전체 비용은 적지 않으며, 국내에서 성별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할 때도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성별정체성과 관련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호르몬 요법과 성별확정 수술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성별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재하거나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국내에서 의료진이 성별확정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의료진이나 직원으로부터 차별을 겪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성별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찾아가던 병원에서 접수된 내 이름 또는 성별이 맞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나,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련 상담이나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차별 경험이 없는 트랜스젠더에 비해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1.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양성애자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심한 사회에서 성소수자라서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의 정도가 클수록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소수자라서 겪게 되는 소수자 스트레스는 의료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낮아진 의료 접근성은 더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3. KITE 연구

한국 트랜스젠더 건강 코호트 연구(Korean Initiative for Transgender Health, KITE) KITE 연구는 성별확정 의료를 제공하는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전향 코호트 연구로, 이미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을 받은 트랜스

젠더 당사자들을 등록, 수년간 추적관찰하며 건강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다. 연구는 2023년 12월 시작됐으며 2025년 1월에 2024년 진행한 1차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어 지난 2025년에는 1년 추적조사 및 신규 대상자 모집이 이뤄졌고, 2026년 현재는 장기추적 및 수술결과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956명이 응답했다. 2024년 응답자 중 약 79%가 이번 조사에 응답해 높은 추적 관찰률을 보였다. 신규 등록자는 288명이었으며 이 중 129명은 호르몬치료를 새로 시작하는 참여자였다. 참여자 구성으로는 트랜스여성이 50%, 트랜스남성이 30%, 논바이너리가 20%였으며 중위 연령값은 28세였다. 호르몬치료 신규 시작자 중위연령은 25세로 나타났다.

호르몬치료 만족도는 트랜스남성 94%, 트랜스여성 90%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 일치감 향상, 젠더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 외에도 삶의 질이나 자존감, 정신건강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사용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호르몬치료 경험자 806명 중 10년이상 사용자가 85명, 5년이상 사용자가 305명이었고, 20년이상 사용한 참여자도 포함됐다. 만족도는 10년이상 사용자는 95%, 5년이상 사용자는 88%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지표는 여전히 심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경험이 우울증 35%, 불안장애 20%, 수면장애 15%로, 트랜스젠더 인구의 취약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지원이 촉구됐다. 또 지난 1년간 자살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30%, 자살계획은 14%, 자살시도는 6%로 나타났다. 일반인구 조사결과에 비해 자살사고와 계획은 20배 이상, 시도는 5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의료접근성 문제도 두드러졌다. 일반진료의 경우 95% 이상이 1시간 이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호르몬치료를 위해서는 응답자 60% 이상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다. 2시간 이상도 10% 이상이었고, 3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성별확정의료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0%는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잘 모른다고 느꼈다. 50%는 병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지만,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와 성별확정의료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성별을 재차 확인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밝힌 후 진료가 거부되는 경험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 1년간 20% (평생경험 기준 30% 이상)에 달했다.

법적 성별정정을 완료한 응답자는 25%였지만, 트랜스여성의 성별정정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앞으로 성별정정을 원한다고 답한 트랜스여성은 68%로, 트랜스여성의 성별정정에 제도적 장벽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 중 10%는 '성별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별정정을 한 트랜스남성의 14%가 성별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자궁절제술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4. 개선 방안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일은 의료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성소수자의 현황 조사와 건강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지닌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구총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이뤄진 단면 설문조사 이상의 건강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트랜스젠더 건강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 결과는 성소수자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성소수자 진료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성소수자 진료 지침을 참고하고 의료진 개인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진료 지침을 인종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는 국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국내 성소수자 건강 관련 연구 결과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성소수자의 건강과 조건에 적합한 진료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성별확정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내에서 경제적 부담은 성소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큰 장벽 중의 하나다. 성별확정 진료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적 조치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잘 밝혀져 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보건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는 건강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적 개입만으로 성소수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와 신분증, 그리고 선거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1. 신분증과 트랜스젠더 차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기에 출생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지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0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지역번호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성별정체성 차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성별번호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은 여실히 드러난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경험과 관련하여 트랜스젠더 응답자 885명 중,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이 15.5%(137명), ‘성인인증이 필요한 술,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의 방문’이 10.0%(88명)였다. ‘보험 가입 및 상담’은 7.1%(63명), ‘증명서 발급’은 6.7%(59명)로 뒤를 이었고, ‘선거 투표 참여’도 3.2%(28명)이었다.

이러한 차별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 554명 중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응답한 사람이 21.5%(119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술,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의 방문’이 16.4%(91명), ‘보험 가입 및 상담’이 15.0%(83명)로 나타났다. ‘선거 투표 참여’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10.5%(58명)이었다.¹⁾

1) 홍성수 책임(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87쪽.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n=885)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n=554)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137 (15.5)	119 (21.5)
성인인증이 필요한 술,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의 방문	88 (10.0)	91 (16.4)
보험 가입 및 상담	63 (7.1)	83 (15.0)
증명서 발급	59 (6.7)	47 (8.5)
은행 방문 및 상담	58 (6.6)	79 (14.3)
집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 가입 및 변경	44 (5.0)	51 (9.2)
본인 명의의 주택 매매, 임대 등 계약	36 (4.1)	45 (8.1)
선거 투표 참여	28 (3.2)	58 (10.5)
여권 발급	27 (3.1)	38 (6.9)
해당 사항 없음(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적 없음)	683 (77.4)	361 (65.2)

두 조사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에 비해 차별 경험이 적은 편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이번 조사에서 더 많이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신분증의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달라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보험, 은행, 핸드폰 가입 등 필수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비율은 비록 낮지만 선거 투표를 포기한다는 응답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차별로 인하여 공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단조차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거를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선거인명부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별을 표시하도록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분증에 의한 차별은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22,286명의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신분증 상 성별표시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32% 가량 감소하고,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역시 22-2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2. 법적 성별정정의 장벽

이렇게 신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법적 성별을 바꾸어 신분증 상의 성별을 성별정체성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성별정정은 현재 법률이 없고 개별 법원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과 판례³⁾는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별정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②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성전환증으로 인한 고통과 반대 성예의 귀속감을 느껴왔을 것
- ③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바뀌었을 것
- ④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재전환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할 것
- ⑤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 ⑥ 범죄나 탈법 의도로 성별정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이 중 당사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건강상의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형성수술(성확정수술) 요구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법적 성별 정정을 했다'는 응답자는 6.9%(61명)에 불과했고,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의향은 있으나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성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55.6%(243명)이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히도 몇몇 법원에서는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형성수술(성확정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모두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기에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법원은 성확정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⁴⁾ 2023년 국가인권위는 대법원 예규 중 성확정

2) Ayden I Scheim, Amaya G Perez-Brumer, Greta R Bauer(2020). Gender-concordant identity documents and mental health among transgender adults in the USA: a cross-sectional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2020, 5(4).

3)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결정;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결정

4) 한겨레(2026. 3. 24.), '성별 정정' 신청했더니 수술 받고 오라는 법원...유엔 "인권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50763.html>

수술에 관한 규정을 인권침해로 보고 대법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예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성별인정법 제정 ▲ 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절차 개선 ▲ 제3의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동의하며 여기에 추가로 과제를 제안한다면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정책 제언으로 지시한 ▲ 주민등록번호 전면 임의번호화 ▲ 선거인명부 등 공문서 상의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책에서 가장 기본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령 독일은 2024. 11. 1.부터 「성별기록에 대한 자기결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SBGG)」을 시행하였다. 이 법 제2조 제1항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성별기재와 다른 모든 사람'은 성별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성별정정 신청의 요건은 '사전신청과 일정기간 내의 의사의 표시'일뿐 별다른 의료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독일의 이와 같은 성별자기결정법은 최초가 아니며 이미 2015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몰타, 덴마크, 콜롬비아, 노르웨이, 벨기에, 우루과이,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가장 기본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가령 독일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성별기록에 대한 자기결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1)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분등록법상 성별 지정 및 이름의 선택을 제3자의 판단으로부터 분리하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
2.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

한국에서도 2022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적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적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적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결정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수많은 트랜스젠더가 신분증 상의 숫자 하나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보지 못하며, 공적 공간에 참여조차 포기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가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발행일 2026년 4월 3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2125-9942 FAX (02)2125-0926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I S B N 979-11-7214-152-3 93330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성차별시정과
Tel : (02)2125-9942 Fax : (02)2125-0926 <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9-11-7214-152-3 93330